


 국토교통부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2020. 3. 24(화) 총 2매(본문 2, 참고 별도)	
담당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담당 자	• 과장 손종영, 사무관 권순길, 주무관 서태진 • ☎ (044) 201-3478, 3479, 4728
보 도 일 시		2020년 3월 25일(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3.25(수) 06:00 이후 보도 가능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연말까지 대구경북 경산시 등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한시 감면키로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으로, 해당 감면대상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 원의 지적측량 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서태진 주무관(☎ 044-201-472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고

피해지역 감면해택 및 감면 유사사례

□ 피해지역 추정 감면해택

(단위:백만원)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합 계	감면예상
3,973건	3,745건	4,143건	997건	12,858건	1,834백만원
648	1,380	1,555	3,753	7,336	

* 전 년도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행 기준으로 30%감면, 10개월 적용시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유사사례

대상지역	'10년 연평도 피폭지역	'17년 포항 지진 피해지역	'19년 강원 산불 피해지역
적용대상	2010.11월 강원도 옹진군 연평면 북한 폭격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 또는 토지(임야)	2017. 11월 경북 포항시 지진 피해지역의 주택 및 시설물	2019. 5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 소실 (전소 또는 반소)에 따른 주택 및 시설물
감면근거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제23조 제3항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제23조 제2항	「지적측량수수료 산정 규정」 제23조 제2항
감면대상	당해 지적측량수수료	당해 지적측량수수료	당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승인	· 지적측량수수료 50%	· 주거용 주택 : 100% · 주거용 이외 : 50%	· 주거용 주택 : 100% · 주거용 이외 : 50%
기 간 (범 위)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	피해진단 '전파' 판정 건물	재난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적용
비 고	※ 자연재해로 인한 사례는 있으나 감염병에 의한 사례는 없음		